

'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이 더욱 쉽고
간편해 집니다.

올해 이렇게 바뀝니다!!

01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습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0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1.17.로 선택하시면 간소화자료를 좀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안내홈페이지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전화상담 문의

☎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란?

- ▶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가 제공동의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자 명단 등록

'24.9.25.~'25.1.10.

회사 → 국세청
[소속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 확인

'24.12.1.~'25.1.15.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신청 내역 및
자료 제공 확인(동의)]

자료 다운·업로드

'25.1.17(1.20.)~3.10.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를 통해 납세자 편의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근로자 명단 등록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서 '24.9.25.부터 '25.1.10.까지 등록 및 추가-제외 가능
- ▶ 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 이용 ② 직접 입력 ③ 전년도에 등록된 명단을 불러오는 방식 중 선택하여 근로자 명단 등록
- ▶ 근로자 명단 등록 단계에서 일괄제공 PDF 파일 압축해제용 비밀번호 (4자리) 설정



PDF파일 내려받기

- ▶ '25.1.20.(또는 '25.1.17.*)부터 '25.3.10.까지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가능
*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25.1.17.로 선택한 경우 1.17.부터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가능
- ▶ 일괄제공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24.12.1.부터 '25.1.15.까지 확인(동의)을 완료하도록 안내



세무대리인 이용 방법

-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입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
- ▶ 다만,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명단 등록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만 가능

근로자 |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



근로자 확인

-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 완료하면 일괄제공 가능
- ▶ 전년도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근로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 ▶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 하루 전까지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짜가 1.17.인 경우 1.16.까지(1.20.인 경우 1.19.까지)
(주의) '24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

회사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 올해부터 회사는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2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되며, 등록 이후 '25.1.10.(금)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 가능합니다.
- 또한,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소속 근로자 중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해야 하는 이유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는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 하루 전까지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회사가 일괄제공 받는 날짜가 1.17.인 경우 1.16.까지(1.20.인 경우 1.19.까지)
- 다만, 올해부터 '24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